

## [별표] 과태료 개정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3 발취

| 위반행위                                                                                             | 법적<br>상한액 | 과태료 부과금액 |     |          |       |     |          |
|--------------------------------------------------------------------------------------------------|-----------|----------|-----|----------|-------|-----|----------|
|                                                                                                  |           | 현행       |     |          | 개 정 안 |     |          |
|                                                                                                  |           | 1회       | 2회  | 3회<br>이상 | 1회    | 2회  | 3회<br>이상 |
|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br>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br>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 100      | 200 | 500      |       |     |          |
| 1)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br>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br>않은 경우                                                    |           |          |     |          | 300   | 600 | 1,000    |
| 2) 그 밖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br>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br>하지 않은 경우                                               |           |          |     |          | 100   | 200 | 1,000    |
| 다.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br>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br>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br>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1천만원      | 50       | 200 | 300      |       |     |          |
| 1)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br>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br>경우                                                  |           |          |     |          | 50    | 200 | 1,000    |
| 2)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br>거래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          |     |          | 300   | 600 | 1,000    |
| 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br>위반한 경우                                                                   | 1천만원      | 50       | 200 | 300      | 50    | 200 | 1,000    |
| 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br>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br>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의<br>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br>소유자등 | 1천만원      | 100      | 400 | 800      | 100   | 400 | 1,000    |
| 버.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br>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br>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br>소유자등                        | 300만원     | 50       | 150 | 300      | 50    | 200 | 300      |
| 서. 법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br>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br>방제를 하지 않은 자                                        | 300만원     | 50       | 150 | 300      | 50    | 200 | 300      |



국민을 위해  
전국행정

www.mafra.go.kr

| 위반행위                                                                                                                                                                  | 법적<br>상한액 | 과태료 부과금액 |      |          |       |     |          |
|-----------------------------------------------------------------------------------------------------------------------------------------------------------------------|-----------|----------|------|----------|-------|-----|----------|
|                                                                                                                                                                       |           | 현행       |      |          | 개 정 안 |     |          |
|                                                                                                                                                                       |           | 1회       | 2회   | 3회<br>이상 | 1회    | 2회  | 3회<br>이상 |
| 어.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br>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br>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br>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br>소유자등                                                                                 | 300만원     | 50       | 150  | 300      |       |     |          |
| 가)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br>두지 않은 경우                                                                                                                                           |           |          |      |          | 50    | 150 | 300      |
| 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거짓으로<br>기재한 경우                                                                                                                                            |           |          |      |          | 100   | 200 | 300      |
| 커. 가축운송업자가 법 제17조제12항을<br>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br>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br>않은 경우                                                                                         | 1천만원      | <신설>     | <신설> | <신설>     | 50    | 200 | 1,000    |
| 소.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br>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 100      | 200  | 500      |       |     |          |
| 1)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br>메추리, 꿩, 또는 기러기를<br>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br>(50제곱미터 이하의 제외한다)을<br>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br>가축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등에<br>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br>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지<br>않은 경우 |           |          |      |          | 100   | 500 | 1,000    |
| 2) 그 밖의 경우                                                                                                                                                            |           |          |      |          | 100   | 200 | 1,000    |
| 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br>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br>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300만원     | 50       | 100  | 200      |       |     |          |
| 1)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br>않은 경우                                                                                                                                         |           |          |      |          | 50    | 100 | 300      |
| 2) 보고해야 하는 자가 거짓으로<br>보고 한 경우                                                                                                                                         |           |          |      |          | 100   | 200 | 300      |

2024년 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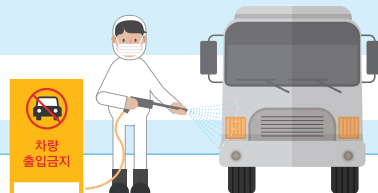
2024.9.15.일 시행

- ‘23.10월 렘피스킨병의 국내 최초 발생에 따라 발생 농장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 근거 마련하기 위해 가축 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렘피스킨병 추가(제2조의2 제3항제1호의3)

\* 기존 공개대상 가축전염병(13종)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브루셀라병, 결핵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백리, 가금티푸스, 뉴캐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낭충봉아부패병

- 가축운송업자가 가축운송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분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별표3 제2호커목 신설)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2025.1.1.일 시행

- 닭, 오리 등 가금 농장주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정상적 작동 관리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조정 등(별표 3 제2호소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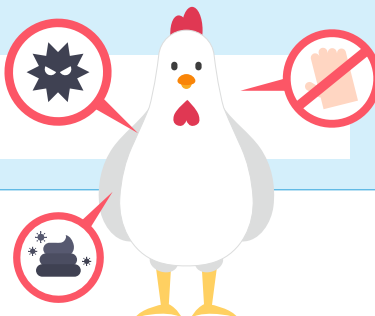
기존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변경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 축산농가 방역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후면별표 참조)

\*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가축 이동 시 검사 등 증명서류 소지 또는 예방접종 표시 명령  
3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300만원→1,000) 등



## 0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23.10월 렘피스킨의 국내 최초 발생에 따라 해외 렘피스킨 발생국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공개 근거 마련을 위해 해외 발생국가 정보 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렘피스킨병을 추가 (제3조의3)

- 렘피스킨 발생국 축산관계자, 여행객 등에 대한 소독 및 방역 조치 근거를 강화하여 렘피스킨의 해외로부터 유입 방지

기존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3종)

변경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 렘피스킨병(4종)

※ 정보 공개 범위 : 가축전염병명, 발생한 국가명 및 지역명, 발생 일시, 가축의 종류, 발생국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등

